

企業의 社會的 責任에 對한 概念化

韓 信 基*

- I. 序 論
- II. 社會的 責任의 諸類型
- III. 社會的 責任의 定義
- IV. 經營者倫理
- V. 社會的 責任의 4 區分
- VI. 實驗을 위한 意義
- VII. 實際面에서의 意義

企業의 社會的 責任 問題가 거론되면서 責任現象에 對한 定義나 모델에 對해서 검토되어 왔다. 그러나 이런 概念이나 定義가 아직까지 실증적인 면이나 理論的인 면에서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責任問題를 보다 더 確實히 理解할수 있도록 하는 理論的 基盤을 조성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핵심이 결여된 정의나 모델은 혼란만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本小考는 企業倫理와 私企業部門에 對한 社會的 기대의 두 要素사이의 合致 내지는 조화라는 理論的 觀念의 바탕위에서 企業의 社會的 責任問題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는 이 概念을 具體化 시킬수 있는 부라우(Blau)와 스컬(Scott)의 제일차 수혜자(Prime beneficiary)와 트리스트(Trist)와 에머리(Emery)의 社會的 責任에 對한 유형학적(Typology)인 면과 組織환경들의 因果的인 結合의 바탕을 둔 社會的 責任의 유형적인 면에 바탕을 두고 있다.

I. 序 論

一般的으로 現代企業의 거대화와 企業活動過程에서 빚어지는 諸般 企業行爲는 社會의 價値와 질서의 충돌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런 단계에서 企業內에서 자주 야기되는 問題가 企業의 社會的 責任이다.

이 社會的 責任이 이렇게 유행물 처럼 남용되지만 그 具體的 內容에 있어서 이 概念이 明確

* 本研究所 研究員, 檀國大 商經大 助教授

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法的 責任 혹은 의무를 意味하게 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자선적인 기부행위를 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다양한 意味속에서 포괄적으로 대개 法的인 면(Legitimacy)에서 보는 경우와 수탁된 의무의 일종으로 보는 見解가 支配的인 듯하다.¹⁾

어떻게 概念을 규정하든 間에 企業의 社會的 責任이란 概念은 近年에 와서 經營人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이를 企業의 이미지(image) 形成에 거의 使用하고 있다. 거의 모든 經營關係 간행물들은 이 문제를 다르게 되었고 대학에서는 정규과목중의 하나로 연구의 과제로 삼고 있다.

그렇지만 거의 예외없이 이에 관한 문헌들은 분석적으로 記述되어 있지 않고 있다. 드러커(Peter Drucker)²⁾가 “선언문과 같이 혹은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시대는 끝나고 집중적인 분석, 통일된 노력,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기술한것 처럼 집중적이고 분석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때가 왔다.

사실 위와 같은 이야기는 하기 쉽지만 어디에서 부터 매듭을 풀기 시작할 것인가는 쉽지가 않다. 그렇지만 現象에 對한 概念的인 모델을 作成해서 우리가 觀察하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확실한 觀念위에서 始作하려고 하는데는 異論의 여지가 없다. 本小考는 組織行態의 관계되는 문헌에 기초를 두고 企業의 社會的 責任이란 現象에 對한 概念的인 모델을 作成해 보려는데 意義가 있다.

II. 社會的 責任의 諸類型

初期에 “社會的 責任”에 對해서 거론하기 始作한 사람은 엘스(Ells)와 월튼(Walton)을 들 수가 있다. 이들은 概念을 記述的으로 모델화하려 시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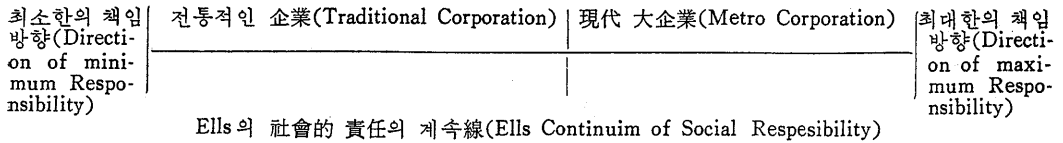
이들이 시도한 이래 많은 모델들이 시도되었지만 내용면에서 거의 엘스와 월튼의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응용 내지 답습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 새로운 모델들은 接近方法에서 政治的이거나 方向제시에 역점을 두었는데 아지스(Adzes)와 웨스턴(Weston) 웨크린(Shanklin)의 모델을 들 수가 있다. 카임(Keim)⁵⁾의 모델은 월튼(Walton)의 “投資모델”(investment model)을 설명 내지 증명하는데 그쳤고 헤이(Hay)와 그레이(Gray)⁶⁾의 “3 分化의 概念化”(three celled conceptualization)는 엘스와 월튼의 모델을 답습하여 거의 같은 문제를 내포하게 되었다. 이들 문제들이란 역사적으로 記述된 모델이란 점이다. 이들 時間上의 나열은 곧 概念的이거나 理論的인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엘스(Ells)는 아래 圖表에서와 같이 社會的 責任을 責任과 無責任 혹은 최소한의 責任과 최

대한의 責任을 兩極에 위치시키고 이 두점을 잇는 연속적인 線上의 어느 한 점위에 실제로 위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圖表 1



組織의 具體的인 行態나 총체적인 行態가 연속적인 線위에 어디에 위치하게 되는 가는 표출된 行態와 會社규범과의 比較에서 決定될 문제이다. 그래서 T₁時에 社會的인 責任으로 생각되었던 것이 T₂時에는 社會的인 責任으로 간주될수도 있고 안 될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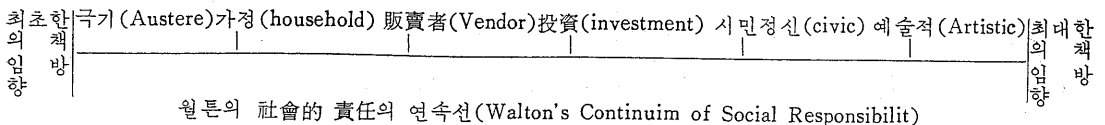
엘스(Ells)는 圖表 1에서와 같이 연속선의 한 極을 전통적인 기업으로 나타내고 다른 한 極은 現代 大企業으로 나타내고 있다. 한 極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란 個人財產의 所有人으로써 株主의 組織 以外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見解로 대변될수 있는 전통적인 企業이 위치하게 된다. 이 論理에 따르면 所有者를 위한 利潤의 極大化가 企業의 合法的인 기능이라고 보고 있다.

다른 反對 極에는 광범위한 社會의 目標나 目的을 수행하는 社會的企業(Social Corporation)이라는 概念의 現代의 企業의 유형이 위치하게 된다. 이 企業 형태는 社會의 각 이해집단을 보호하는 기업을 의미하게 된다. 이 기업의 전문가적 經營人들은 각기 상충하는 權利주장자들 사이에 이해문제를 평형되게 유지하게 한다.

그러나 이 보다 더한 것은 專門家의 經營人들은 여러가지 面으로 이들 權利주장자들의 복지에 對해 社會的인 責任을 지게 된다. 전통적인 企業은 단지 경제인(Economic Man)이라는 概念만을 企業組織에 부여하는데 反해 現代 大企業은 全體人(Whole Man)이란 概念 밑에서 活動하게 되고 마치 市民복지의 수호자와 같은 役割을 하게 된다.

월튼의 모델은 엘스의 모델을 좀더 확실히 하고 범위를 확대시켰다. 그는 엘스의 연속선 개념(Continuum Concept)을 좀 더 細分해서 圖表 2에서와 같이 社會的 責任을 6가지 類型으로 區分토록 하였다.

圖表 2



위의 圖表에서 보는바와 같이 극의 (Austere) 유형은 근본적으로 엘스(Ells)의 전통기업의

것과 같고 市民精神의 유형은 엘스(Ells)의 現代 大企業의 責任을 意味하게 된다. 월튼은 이 企業의 社會的 責任問題가 거론될때 概念化 단계에 있어 크게 기여했지만 월튼의 위의 6 가지 類型의 연속선상의 區分은 實驗的 검토를 위한 기초로써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단점은 觀察된 組織行態를 合致시키려는 總合的인 생각을 時系列上으로만 記述하려는데서 연유하게 된다.

이 類型들은 實際組織의 行態보다는 오히려 行態에 對한 추상적인 理論化에 기반을 두고 있다.

Ⅲ. 社會理 責任의 定義

챔버린(Neil Chamberlain)은 社會的 責任을 企業의 經營人이나 노동조합의 지도자가 法的 이든 法的이 아니든 간에 주어진 상황내에서 그들의 權利의 實체인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관련시켜 그들이 추구하려고 행하는 행동의 범위내에서 社會적 책임을 규정하였다. 社會的 責任이란 反應의 메카니즘(Response Mechanism)이기 때문에 이는 단지 全體 社會에 對해서가 아니라 特定人들에 對해서 의무의 완수를 기함으로써 충족될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

反應의 觀念에 관한 見解로써 후레드릭(Frederick)의 것이 있다. 그는 社會的 責任範圍內에서 企業이 대중의 기대를 이룰수 있게 하고 經濟的 體制의 運營을 감독하는 것을 필수요 件으로 들고있다. 이는 바꾸어 말해 生産과 유통과정의 全體 社會經濟的인 복지를 높일수 있도록 生産수단이 運營되도록 함을 意味하게 된다.

社會的 責任이란 협의의 個人이나 個別企業의 利益을 改變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社會的 目的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物的 人的 資源이 使用되는가를 감독하려는 意志(Willingness)이다.

이와같이 챔버린이나 후레드릭의 定義는 다른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첫째 責任이 이루어 질때 받을 수혜자와 두번째 어떤태도 또는 매체가 企業의 行動을 유발하는가 하는 観点에서 보았다. 特히나 후레드릭의 定義는 企業 經營人에 對한 社會的 責任을 다 할수 있게 유발할수 있는 動機가 되는 社會的 態度(Social Affitude)에 역점을 두었다. 이는 다분히 월튼의 예술적 유형과 맥을 같이 한다.

이와같은 見解 以後 세티(Setti)등 여러 다른 學者들에 依해서 정의가 내려졌는데 세티에 依하면 그는 社會的 反應度(Social Responsiveness)에 따라 제 1 상태 제 2 상태 제 3 상태로 구분하였다.

이 圖式에 의하면 제 1 상태의 行위를 社會的 義務(Social obligation)이라고 하고 제 2 상태

를 반응의 메카니즘 제 3 상태를 社會的 反應이라 하였다. 제 3의 상태는 다분히 예치적이고 예방적인 상태 즉 사전행위의 메카니즘을 의미하게 된다. 사전행위라 하더라도 이는 社會的 責任에 對한 회의론자들이 反論을 제기시키는 當爲性的 要素(Ought element)를 내포하게 된다. 후리드만(Milton Friedman)이나 레발(Theodore Levitt)⁹⁾은 이와같은 구속을 반박하면서 反社會的 責任論을 제기하게 된다.

크라인(Philip Klein)¹⁰⁾은 社會的 責任의 意味를 組織의 內的 外的 問題와 연결시켜 설명하였다. 內的 問題란 株主나 근로자의 權利問題이고 外的 問題란 지역사회에 對한 生産品이나 서비스의 영향, 販賣節次와 社會的 價値와의 關係, 企業의 시민정신을 뜻하게 된다.

크라인의 二원분류는 명확성이 결핍되어 있는데 이는 내부적으로 볼때 내부권리 당사자에 대한 의무의 우선 순위와 외부문제에 對해서 具體的인 우선 순위를 質이나 量的인 面에서 明示하지 못하고 있다.

IV. 經營者 倫理

윤리란 윤리적 행위나 판단의 基準이 되는 體系를 意味한다. 그러므로 行動이나 믿음의 체계는 윤리의 한 要素이다. 페틸(Petit)¹¹⁾은 이 두 要素를 實際的 面(operational aspect)과 이념적인 面(ideological aspect)의 兩面性으로 보았다.

實際的인 面이란 실제 행위의 지침이 되고 실제 행위의 바탕이 되는 사상으로 보았다. 윤리의 실제와 이념적차이는 行動과 믿음의 차이이다. 個人이 行動을 취할때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항상 행동이 사상과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다.

실제로 인간은 가끔 그들이 갖고 있는 이념과 배치되는 행동을 취할때가 많다. 이 경우 소위 페틸이 거론하는 윤리의 위기(Moral Crisis)에 直面하게 되며 두개의 상충되는 윤리를 취하게 된다. 이때 인간은 실제의 윤리와 이념적인것 사이에서 방황하게 되며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념적인 믿음이나 배치되는 행위 또는 兩者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企業의 지역사회는 이해집단으로써 企業의 이념적인 윤리에 強力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새로운 윤리를 취하거나 거부하는데 강력히 작용할수 있다. 이들이 새로운 이념적인 윤리를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는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사실 기업의 이념적인 윤리의 面은 광대한 것이다.

社會에 企業윤리가 수용되기 위해서는 기업윤리가 現存하는 社會의 윤리적 이념과 일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실 사회적 이념과 기업의 실제적 윤리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는 기업의 실제적 윤리가 사회의 기대에 合理的으로 부응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이런 관계속에서 企業의 社會的 責任에 對한 定義가 社會의 윤리적 이념과 企業의 윤리적 이념과 실제적 윤리 관계를 내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결론을 지을수가 있다. 그러므로 企業의 社會的 責任은 企業의 지역사회의 社會的 기대와 企業윤리 사이에 合致(fit)되는 정도로 概念化 시킬수 있다.

이 合致에는 두개의 構成要素를 생각할수 있는데 첫째는 行態的인 面이다. 이는 社會의 기대와 企業行態의 合致이다. 그러므로 社會的 責任의 첫째 構成要素는 社會가 企業에 對해서 그들이 行하기를 기대하는 것과 關係해서 企業이 行動을 취할때를 의미하게 된다. 이때 企業의 실제의 行爲와 企業이 취해야 할 社會的 규범과 比較해서 責任의 이행도를 위의 圖表 兩極사이에 규정할수 있게 될 것이다.

두번째 要素는 態度的 側面이다. 이는 社會의 기대와 企業이 合法的이고 合理的인 社會의 要求라고 사려되는 것과의 合致이다. 바꾸어 말하면 企業윤리의 이념적인 面을 意味한다. 이는 무엇이 社會的으로 책임있는 組織行態인가에 對한 經營層의 態度를 意味한다.

위와 같은 概念化가 이루어 질때 企業의 社會的 責任을 理解하기 위해서는 겔부레이드(Galbraith)¹²⁾의 성숙된 企業(Mature Coporation)과 같은 個人企業에게 社會가 要求하는 物質的이고 社會性을 갖는 서비스나 상품생산에 關聯되는 기대나 要求에 聯關시켜 經營者의 態度나 組織行態를 조사, 검토함을 필요로 하게 된다.

V. 社會的 責任의 4 區分

時間的인 틀에서 볼때나 혹은 부라우(Blau)와 스컬(SCOTT)¹³⁾의 제 1 차적인 수혜자 또는 혜택자의 개념이나 에머리와 트리스트¹⁴⁾의 組織환경의 因果的 關聯性的인 입장에서 볼때 社會的 要求나 기대는 4 가지 국면(Phase)으로 區分해서 볼수있다.

1. 에머리와 트리스트의 類型

社會的 責任을 理解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의 하나가 組織 外部환경의 構成이 스스로 변화하고 점차로 복잡해 진다는 것이다.

이런 觀點에서 어떻게 환경을 觀察할 것인가를 에머리와 트리스트가 제기했다.

이들에 의하면 환경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분석을 社會的 水準(Social level)에서 환경의 因果的인 構成을 再定義 하지 않으면 안된다.

에머리와 트리스트¹⁵⁾는 不確實의 程度나 어떤 다른 面과 關連시켜 볼때 組織환경은 因果的

構成面에서 다르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런 관점에서 모든 組織환경을 이상적인 4가지 形態로 區分하였다. 이상적인 4가지 形態란 환경의 構成要素들 사이에 相互聯關作用에 따라 순서적인 차례로 나누어 지는데 첫째로 “靜的인 無作爲 환경”(placid randomized environment)이다. 이는 組織에 對해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간에 환경구성이 변화하지 않고 구성 요소가 무작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음의 形態는 “靜的으로 群集된 환경”(placid clustered environment)이다. 이 경우도 相對的으로 변화하지 않지만 構成要素가 群集된 상태로 있게된다. 세번째 形態가 “동요를 일으켜 반작용을 이루는 환경”(Disturbed reactive environment)이며 위의 두 단순한 靜的인 환경위에 質的인 변화를 일으키는 상태이다. 이 환경은 同質性的인 다른 組織환경을 결합하는 상태로 특징지어 질수가 있다. 네번째 형태가 에머리와 트리스트가 集中的으로 研究의 과제로 삼았던 “動的인 場”(turbulent field)이다. 相互聯關作用의 속도나 효과를 예측하거나 統制할수 있는 組織의 能力을 초과하는 상태라 할 수 있다.

動的이란 환경내 構成要素의 因果的인 相互聯關作用속도의 急速과 복잡화로써 특징지어 질 수 있다. 動的인 환경에 있어서 가장 重要的인 面은 個別組織이 그들의 직접적인 行動으로 환경에 적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에머리와 트리스트는 組織의 安定(stability)을 기한다는 것은 現 産業社會에서 같이 “動的인 場”에서는 거의 不可能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 局面에 重要性을 부여할수 있는 새로운 價値體系가 출현할 때 安定을 기할수 있는 解決點을 發見할 수가 있다. 환언하면 經營者의 윤리적 관점에서 환경내 경영인들에게 새로운 強力한 理念的 價値體系를 부여함으로써 이 환경에 대처해 나갈수 있고 단순화 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強力한 기업윤리의 理念的인 面이 나타날때 “動的인 場”의 企業환경의 性格은 다른 形態로 변하게 된다. 이때 因果關係에 의해서 相互聯關되었던 “動的인 場”의 환경이 새로운 強力한 理念的인 윤리에 支配 當하면서 靜態化되고 單純化 되는데 單純化와 靜態化의 度는 이 윤리의 社會的인 기대와 반영도에 따라 달라 질수가 있다.

2. 부라우(Blau)와 스컬(Scott)의 類型

부라우와 스컬¹⁶⁾은 組織의 觀點에서 組織의 行態의 特徵을 규정할수 있는 사람을 聯關시켜 組織의 類型을 區分하였다. 이에 依하면 ① 組織內의 所有者 또는 經營人 ② 組織構成員 ③ 고객 ④ 大衆으로 區分하였다. 이는 일차적인 수혜자가 누구인가에 기초를 두고 組織을 區分하였다. ①의 경우는 1次的인 수혜자가 所有者나 經營人인 경우의 組織을 뜻하고 ②는 組織構成員인 경우 ③의 경우는 고객의 경우 ④는 대중의 경우의 組織을 意味한다.

베이리의 4분 모델

Direction of Decreased Responsibility ←		Continum of Social Responsibility			→ Increased Responsibility	
Phase Elements	I	II	III	IV		
Idea type(name)	Owner/Manager	Organization Participant	Task Environment	Societal		
Histocal period (approximate)	1850~1910	1900~1950	1945~1965	1960		
Social demands/ expectations (Represented by laws enacted) representative not inclusive	Sherman Act 1870	Workmen's Compensation 1938 Clayton Act 1914 Income Law (Corporate) 1917 Blue Eagle 1925 Morns La Guarelia 1932 Wagner Act Wage Hour Law 1936 Social Security 1941 O.P.A 1940-45	Wheeler Lea 1938 Wool Labelling 1929 Taft Hertley 1947 F.A.A. C.A.B F.O.A H.E.W Flour Products 1951 Flammable Products 1953 Textile Fiber 1958 Landrum Griffin 1959 I.C.C	Water Follution Centrol 1961 Clean Air 1963 Civil Rights 1965 Air Quality 1967 O.S.H.A. 1970 Environmental Quality 1970 E.P.A 1970 Amendment Civil Rights 1972 No. Discrimination in Age Equal Pay		
Social Milieu	Industrial era. days of "robber barons" and muckrakers. gospel of Wealth. Social Darwinism	Rise of unionism. People are more than a factor of Production	Marketing Concept. a firm can no longer sell all that it can produce	Pressure internalize economic and Social externalities		
Environmental type aapproxim- ately those of Emery and Tristy	Placid randomized (e.g. classic market)	Placid clustered(e.. unperfect competi- tion)	Disturbed reactive (e.g. oligopely)	Turbulent field(no economic concept as yet, however sympt- oms are present (e.g. stagnation)		
Prime beneficiary group (Blau and Scott)	Owners/Managers	Owners Managers, plus employers(org- anization participants)	Owners, Managers, Employees, plus Suppliers Distributors Creditors etc	Task environ- ment Owers / Managers, Employees, Task enviroment, plus Pubilc at large(Soc- ietye as whole)		
Primary organiz- ational goals	Profit	Profit Resource Utilization	Profit Resource Utilization Sales Volume	Profit Resource Utilization Sales Volume Welfare of Society		
Primary type of Policies	Financial	Financial Industrial	Financial Industrial Market	Financial Industrial Market Socie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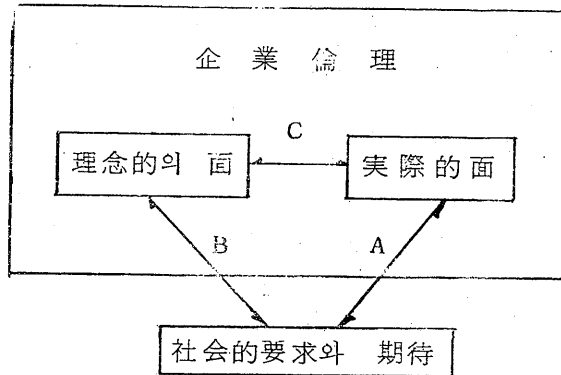
위의 諸般 모델에서 거론된 社會의 기대, 환경, 이념 등의 諸般要素와 社會的 責任에 對한 제 1 차적 수혜자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시도한 사람이 베이리(Bailey)이다.

베이리¹⁷⁾는 圖表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의 거론된 諸般 모델의 要素들을 종합하여 相互關係性을 보다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일단 수리적인 검증을 할수 있는 기반을 제시하였다.

VI. 實驗을 위한 意義

本 小考 머릿말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위의 제안된 모델들은 社會的 責任의 現象에 對한 실증적 고찰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위의 모델들에서 제시한 것 처럼 社會的 責任에 對한 概괄적이고 종합적인 圖式을 시도함으로써 社會의 기대의 틀內에서 經營者의 態도와 組織行態를 同時에 볼수 있다. 위의 諸般 모형을 종합하여 圖表 4 와 같이 作成해 볼때 圖表內 세가지 要素들은 서로 獨立되어 있으면서 相互作用을 하기 때문에 同時 觀察되어 지지 않으면 않된다.

圖表 4



社會的 責任 모델

이 各要素들 內의 社會的 責任의 연속적인 범위를 4 가지 유형으로 區分하게 되는데 이는 부라우와 스킨의 類型을 톰슨(Thomsen)¹⁸⁾의 변형된 概念으로 바꾸어 그 특징적인 內容과 함께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所有者—經營人의 형태

- ① 企業은 經營에 충실함으로써 社會에 봉사한다.
- ② 社會에 있어서 企業의 유일한 목적은 利潤창조에 있다.
- ③ 社會에 있어서 企業의 유일한 役割은 財貨와 서비스 창조에 있다.
- ④ 企業은 엄격히 경제적 제도이다.

⑤ 勞動은 매매될수 있는 상품이다.

組織참여자 形態

- ① 고용인은 단순히 생산요소만은 아니다.
- ② 企業은 作業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 ③ 企業은 最大限度로 고용인을 발전시키고 可用할 의무가 있다.
- ④ 企業은 고용인의 의, 식, 주의 關한 모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과업환경 유형

- ① 企業은 完全한 生産面에 對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② 企業은 基礎적인 상품생산은 하지 말아야 한다.
- ③ 企業은 價格政策을 남용해서는 않된다.
- ④ 企業은 不安全한 生産品을 市場에 내보내서는 않된다.
- ⑤ 企業은 사기성의 行爲를 말아야 한다.
- ⑥ 企業은 物的 정신적으로 地域사회 복지를 도와야 한다.
- ⑦ 企業은 항상 地域행정기관에 최대한도로 협조해야 한다.
- ⑧ 企業은 타기업과 相互협조해야 한다.

社會的 유형

- ① 企業은 中央政府에 최대한 협조를 해야한다.
- ② 企業은 환경을 훼손해서는 않된다.
- ③ 企業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 공평해야 한다.
- ④ 企業은 모든 責任을 갖는 사회의 능동적인 참여자다.
- ⑤ 企業은 능동적으로 社會正義 具現을 창달해야 한다.
- ⑥ 企業은 經濟的인 同時에 社會的인 制度이다.

위의 一聯의 特徵은 社會的 責任에 對한 經營者의 이념적인 태도와 실제적인 태도의 실증적 區分을 의미한다. 위의 항목을 要素分析(factor Anelyss) 또는 Scale Analysis를 通해서 組織의 實際的인 行態 내지는 理念的인 面을 분석할수 있고 社會의 要求나 기대에 對한 분석과 결들어 세 要素의 3가 關係를 분석, 타 기업조직과 책임에 對한 行態를 分析 比較할수 있다.

VII. 實際面에서의 意義

이 모델은 실제面에서도 社會的 責任分野에 있어서 組織의 效率性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할 經營層의 관심의 분야를 보여주고 있다.

